

나쁜 뉴스,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

〈2〉 “비판하면서 해명할 기회도 안줘...”



김지영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서울 제4부 중재위원, 前 경향신문 편집인



지난 여름호에 ‘나쁜 뉴스 어떤 얼굴을 하고 있나’라는 주제로 나쁜 뉴스들에 대한 칼럼의 시리즈 첫 회를 게재했다. 허위·과장·왜곡의 제목에 관한 것으로 그 사례들과 함께 관련 보도윤리를 설명했다.

그런데 글을 읽은 지인 중 한 두 분이 이런 말을 했다.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대안도 제시해야 하지 않겠소?”

사실 이같은 질문에 대해서는 여름호 글에서도 답변에 해당하는 설명을 했지만, 내가 독자들에게 와닿게 설명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이번 가을호 글의 앞 대목에서 다시 설명을 하자면, 이 시리즈물이야말로 바로 그 대안에 해당한다. 가짜뉴스와 불량뉴스(그 전체를 나쁜 뉴스라고 칭하기로 한다)에 대한 식별안목을 기르는, 일종의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 강좌인 셈이다.

미국의 팩트체크 연구기관이 내놓은 ‘가짜뉴스 판별하는 8가지 방법’이 잘 알려져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뉴스 사이트의 목적이나 연락처 등 출처를 확인하라 ▲전체 내

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기 ▲작성자가 실존 인물인지, 어떤 이력을 가졌는지 등을 확인해 믿을 만한 정보인지 판별하기 ▲관련 정보가 뉴스를 실제로 뒷받침하는지 근거를 확인하기 ▲오래된 뉴스를 재가공한 건 아닌지 날짜 확인하기 ▲뉴스 내용이 이상하다면 풍자성인지 의심하기 ▲자신의 평소 가치관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선입견 확인하기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확인하기

매우 타당한 제안이다. 하지만 그 요령의 대부분이 뉴스 기사를 읽고 있는 독자들이나 이용자들이 금방 실행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따로 시간을 내서 별도의 탐색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다. 한 매체에서도 많은 기사를 훑어내려가며 읽는 독자들이 언제 이같은 작업을 일일이 할 수 있겠는가. 이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이들에게 권장할 만하다고 본다.

필자는 나쁜 뉴스 식별 기준을 저널리즘의 수칙인 보도윤리(신문윤리 실천요강)로 삼는다. 그러면서 언론중재위원회나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다른 사건들을 윤리요강별로 분류해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자든, 일반 시민이든 이렇게 보도윤리를 터득하고, 관련 사례를 공부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처음 대하는 뉴스일지라도 어떤 윤리요강에 맞는지 또는 맞지 않는지 알게 되면 뉴스의 정확성이나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많은 힘을 쏟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보도윤리와 그 사례에 대한 공부를 중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크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대중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의 교육내용도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돼있다. 어려운 내용도 쉽게 가르쳐야할 것이 리터러시 교육인데, 쉬운 것도 어렵게 가르치고 있다. 마치 사회학 학문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보도윤리와 그 사례를 중심으로 대중이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교재나 교사 양성 등 교육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말하자면 필자는 이 칼럼을 그러한 기획의 하나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여름호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들어온 사건 중 매체들이 매우 빈번하게 위반하는, 즉 허위·과장·왜곡을 일삼고 있는 ‘제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관련 윤리요강과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아마도 그 글을 읽어본 이라면 누구나 어떤 뉴스기사의 제목을 보더라도 옳게 뽑은 것인지 아닌지 식별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번 호에는 언론중재위에 신청된 사건 중 제목 못지않게 많은 매체들이 일상적으로 어기고 있는 ‘비판대상자에 대한’ 답변의 기회 제공’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답변의 기회는 다시 말하자면 반론의 기회 또는 해명의 기회이기도 하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 방어권리가 있다. 자신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천부의 권리이며 동시에 정당방위이다. 당연히 법률에도 그 근거가 있다. 한국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사 중범죄자로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진술기회를 준다. 노사관계에서도 변명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는 비록 징계사유가 정당하더라도 부당한 징계로 무효가 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다.

언론보도는 당연히 이같은 기본 인권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물론 ‘감시와 비판’은 언론의 중요한 기능이다. 그 중에도 공인이나 공공의 문제에 대한 언론의 비판은 거의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언론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제한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형법상 형사처벌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도 따른다(물론 매체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때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언론윤리는 비판 기사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에는 “보도기사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판적이거나 비방적 내용을 포함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 돼있다.

또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은 제4조(균형성과 반론권 보장)에 ②(반론권 보장)항목을 두고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그럼에도 많은 매체들이 이같은 윤리규정을 외면하고 있다. 언론중재위 심리를 하다보면 “이런 보도윤리에 대해 애당초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문마저 들 때가 많다. 비판하는 대상자에게 ‘답변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신문·방송 등 이른바 레거시 매체(전통 매체)나 신생 인터넷 매체나 마찬가지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인터넷신문기사심의위원회가 울들어 각각 매월 심의한 결과를 보면 답변의 기회나 반론권 보장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는 소수이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의 피신청 매체 중에는 답변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흔했다. 이같은 매체들은 애당초 취재과정에서 비판대상자의 해명을 받아 보도기사에 반영했어야 마땅한데도 이같은 기본책무를 외면했다가 뒤늦게 언론중재위까지 와서야 반론게재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다음은 보도기사에서 비판대상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언론중재위에서 반론게재로 결정이 난 사례다.

▲S매일은 두 차례에 걸쳐 T업체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8월 17일자 사회면 「쩨(錢)의 위력에 OO리 주민 불안 고조」라는 제목의 기사와 8월 18일자 사회면 「폐기물 반대 대책 주민 엽총 차량 테러에 주민들 분노 폭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S매일은 이 기사들을 통해 “T업체가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관련해 반대 측 주민들에게 사후보상과 금전으로 회유하고 있으며 찬성 주민들이 반대 측 주민의 차량을 엽총으로 테러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 업체가 반대 측 주민들에게 금전적 회유나 사후 보상을 약속해 설득했다는 내용은 소문이 돌기는 하지만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또 엽총 차량 테러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총기에 의한 테러사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단계였다.



그런데도 S매일은 이를 사실처럼 보도하면서도 T업체의 해명은 게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제목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못박았다. 결국 S매일은 T업체의 반론을 게재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2021년 5개 온라인 매체에 대해 연예인 박수홍씨와 관련한 기사에 대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③(반론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판단, ‘주의’ 조치를 내렸던 사례이다.

- ▲ 스포츠D 「박수홍 진흙탕 폭로 “탈세·낙태 몇 번” 제목의 기사
- ▲ S경제 「박수홍·친형 진흙탕 싸움…횡령 고소 이어 탈세·낙태 의혹 제기」 제목의 기사
- ▲ H경제 「가세연, 박수홍 탈세·낙태 의혹 제기」 제목의 기사
- ▲ 스포츠S 4월 6일자 「“박수홍은 감성팔이” 가세연, 위장 취업·낙태 의혹 제기」 제목의 기사
- ▲ M투데이 「가세연 “박수홍 여친이 친형 고소 작전 짚다…클럽서 만나” 제목의 기사

이들 기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친형과 재산을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벌였던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을 폭로한 내용을 다루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들 매체는 박수홍의 형 횡령 의혹 폭로와 관련해 가세연 측이 “93년생 여자친구가 작전을 짰 것”이라며 “스토리텔링을 정말 잘해서 대중을 완벽하게 선동했다”고 주장하는 등 박수

홍 여자친구에 대해 폭로한 의혹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또 위장취업과 탈세, 낙태 전력 등 박수홍의 사생활에 대한 가세연의 주장을 그대로 담았다. 이는 마치 박수홍의 여자친구가 낙태를 한 것처럼 묘사해 박수홍과 여자친구의 도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기사는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한 유튜브 채널 가세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하고 있는 반면에 사생활 폭로의 대상인 박수홍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기사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다음은 2022년 한 인터넷신문이 비판대상자에게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가 인터넷신문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로 제재를 받은 사례이다.

▲K연합신문 「대한항공 자폐인 탑승 거부’ 사연에 엇갈린 누리꾼 반응」

이 기사는 대한항공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자폐인 승객의 비행기탑승을 거부했다는 주장을 다루었다. A씨가 자신의 네이버블로그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자폐아인 아들을 데리고 탑승수속과 검색을 마치고 탑승했는데 승무원이 내려달라고 했다”는 내용을 올렸다. K연합신문은 이를 그대로 게재했다. 이처럼 블로그에 올라온 일방적 내용에 대해서는 대한항공 측의 해명을 들어보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K연합신문은 이같은 보완취재없이 블로그의 내용만 신문에 게재했다.

매체가 늘어날수록 저널리즘의 제1수칙인 ‘사실 확인’ 또는 ‘사실 검증’을 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실 확인 중에서도 답변의 기회 제공이나 반론권 보장 같은 기본적 인권 사안조차 소홀히 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에 대해서만 알고, 당사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매체와 기자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을 뜻한다.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인 정확성과 객관성, 공정성이 갈수록 흐려져가고 있는 것이다.

이역시 사실이 실종되고 저널리즘은 갈수록 붕괴해가는 현상의 한 단면이다.

이같은 실태를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일반시민들에 앞서 우선 기자들을 상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